*UNC Reg 525-2

*유엔사 규정 525-2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 사령부

APO SAN FRANCISCO 96301

대한민국, 서울

REGULATION

규정

NUMBER 525-2

번호 525-2

6 April 1982

Military Operations

군사 작전

CIVIL ADMINISTRATION OF TAESONG-DONG

대성동 민사행정

*유엔사 규정 525-2

유엔군 사령부
대한민국, 서울

규정
번호 525-2

군사 작전
대성동 민사행정

1. 목적. 본 규정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 민사행정을 위한 방침을 기술하고 참모부서 및 기타 기관 또는 사령부에 책임사항을 부여한다.

2. 범위. 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라 본 규정은 모든 유엔사 소속 군인 및 민간인과 대성동 주민에 적용된다. 본 규정은 대성동 출입을 원하는 기타 모든 군 또는 민간인의 개인 또는 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3. 용어설명. 가. 대성동. 좌표 비.피.963013에 있는 1개 마을과 그 주위의 농토를 포함한 비무장지대 남쪽부분에 있는 1개 지역인바 이 농토의 범위는 비.피.956025로 부터 군사분계선을 따라 비.에스.965992까지 남쪽으로 벋어내려가다 동쪽으로 비.에스.978991까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비.에스.981983: 비포장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비.에스.991992까지: 그리고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따라 씨.피.005007까지: 북동쪽으로 비.피.994025까지 내려가다 다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서쪽으로 비.피.956025까지 연장된다.

나. 민사행정. 대성동에서의 정부 업무의 관리.

다. 민사업무운영. 이 조치는 정전협정의 준수를 이행하고 자체경비를 유지하며 주민과 이 지역의 문화 및 경제발전 및 복지에 기여하는 협조 및 구호사업에 관한 것이다.

라. 경비. 유엔군의 통제하에 있는 부분의 비무장지대내로 침투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4항 사(4) 및 상기 3항 다에 명시된 대내 경비임무를 위한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민사행정반. 대성동내에서 본 사령부의 민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41명의 군사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민사행정반은 공동경비구역 유엔군 사령부 지원단 단장의 작전 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연락장교 (대위) 1명과 카투사 선임하사관 (상사) 1명 그리고 39명의 카투사 병사들 (일병-병장)로 구성되어 있다.

4. 책임.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유엔군 총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남쪽부분의 민사행정 및 구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책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된다.

가. 미 8군 인사 사령부 (잠정) 사령관은:

(1) 민사반 고체요원을 심사한다.

(가) 민사반원은 하기 분야중 한개 혹은 그 이상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이에 대한 경력을 가져야 하며, 민사반 구성인원들은 이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야 한다. 즉, 행정, 보건/위생, 공공/법집행, 농업, 경제 및 공병.

(나) 반장과 선임하사는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2) 시간 차이를 두어 인원을 교대시킴으로서 일시에 교대되는 인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나. 민사참모부장은: 대성동 민사행정에 대한 계획 및 방침을 발전시킴에 있어 이에 대한 조언을 하고 협조한다.

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비서장은:

(1) 대성동 민사행정에 대한 계획 및 방침을 규정하는 현행 "대성동 민사행정에 대한 유엔사 지침"을 비치한다.

(2) 대성동 민사행정에 대한 유엔사 방침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유엔사 계획을 실시한다.

(3) 필요에 따라 대성동 행정 소요를 타 유엔사 참모기관과 협조한다.

---

*본 규정은 1979년 8월 24일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526-2를 대체한다.

(4) 하기 4항 사(5)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전협정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은 기타 모든 인원들의 대성동 방문에 대한 인가자 역할을 한다.

라. 법무감은 사법행정과 대성동 관리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하고 협조한다.

마. 주한미군 헌병감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의 요청시 대성동의 법과 질서유지에 관해 조언하고 협조한다.

바. 한미 연합야전군 사령관은:

(1) 공동 경비구역 유엔사 지원단장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비서장과 협조하여 대성동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다.

(2)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지원단장의 요청에 따라(능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재난구호 및 대성동의 발전을 위한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자, 장비 및 인원을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을 협조하기 위하여 연합 야전사(한/미)급에 연락처를 유지한다.

사. 공동 경비구역 유엔사 지원단장은:

(1) "대성동 민사행정에 대한 유엔사 지침"에 규정된 계획 및 방침에 의거하여 대성동 민사업무를 실시한다.

(2) 민사반에 임명된 요원들의 전반적인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자격이 없는 자는 탈락시킨다.

(3) 대성동내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비서장에 건의한다.

(4) 한미 연합 야전군 사령관과 협조하여 마을자체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다.

(5) 한국정부로부터 신원조회 확인을 받은후에 대성동 출입을 요하는 대한민국 내국인들에게 임시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발급한다.

(6) 파주군 공무원들과 협조를 유지한다.

(7) 대성동 이장 선거를 감독하고 이를 비준한다.

(8) 대성동의 연례 예산을 비준한다.

5. 방침. 가.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 공동감시반,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히 출입을 허가한자에게는 정전협정에 의해 대성동내에서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허가되어있다.

나. 특정한 세대들은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같이 정전협정과 협정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들의 규정에 의해 비무장지대내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영위하도록 허가되어 있다. 현재로는 1954년 2월에 북한과 교환한 최초의 명단에 세대나 개인(학교선생을 제외하고)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진정한 거주자들은 매년 최소한 8개월 이상 대성동에 상주할 때에 한해서 그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거주자들중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또는 입원을 했거나 대성동 밖의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또는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년중 4개월 이상 마을을 떠나서 있는 사람은 대성동에서 그들의 거주권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다. 대성동 주민들은 상기 3항 가에 명시된 경작지역내에서 주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지 부대장의 허가없이는 공동경비구역,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및 스웨덴 캠프, 그리고 이 지역내에 있는 군시설물에 대한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6. 참조. 가.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 제1권 (8항, 9항 및 10항)과 주기적으로 연장되는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원칙에 관한 합의사항.

나. 유엔군 사령부 규정 551-4 (정전업무 - 정전협정 준수).

본 규정의 주무기관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임. 사용자는 논평 및 개선에 관한 제안사항을 육군성 양식 2028 (간행물 및 백지 양식의 수정 건의)에 기재하여 유엔군 사령관, 참조: 정전사무국, 군우 96301로 제출해주기 바람.

유엔군 사령관을 대리하여:

주무관:

암 미볼유. 굴빡아트
중령, 미육군
부관처장, 유엔사

원필드 미볼유.스코트, 쥬니어
중장, 미공군
유엔사 부사령관

배부처:

1 - 연합사 비서실
1 - 연합사 인사
1 - 연합사 정보
1 - 연합사 작전
1 - 연합사 군수
2 - 연합사 기획
1 - 연합사 통전
1 - 유엔사 비서실
1 - 주한미군 인사
1 - 주한미군 정보
1 - 주한미군 작전
1 - 주한미군 군수
5 - 주한미군 민사
1 - 주한미군 통전
10 - 정전 사무국
2 - 법무참모
2 - 헌병감
1 - 외무감
55 - 공동경비구역 유엔군 지원단장
(대성동 배포 포함)
20 - 한미 연합 야전군 사령관, 군우 96358
3 - 한미 작전기획참모단
50 - 주한 미 인쇄창
6 - 부관부 발행처